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129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민욱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D과 선정자 C(이하 편의상 ‘피고 C’이라 한다) 사이에 2020. 3.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0/174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0/174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D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라 한다) 사이에 2020. 3.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B는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E(이하 'E')으로부터 2015. 8. 26. 36,000,000원을 상환기일 '대출일로부터 1년', 이자율 'COFIX + 연 3.7%', 지연배상금율 '대출금리 + 연 1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2016. 5. 16. 3,500,000원을 상환기일 2019. 5. 15., 이자율 연 11.9%, 지연배상금율 연 1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나. D은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E은 2019. 10. 23.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며, 2019. 11. 7.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21차전1655),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6. 2. 확정되었다.

라. 한편 D의 아버지인 F은 2019. 11. 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피고 C(배우자), G(장남), 피고 B(장녀), H(차녀), D(차남)이 있었다.

마. F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제○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3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3. 9. 피고 C 명의로 2019.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3. 9. 피고 B 명의로 2019.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D과 피고들, G, H 사이의 위 협의분할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인 D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46,945,128원의 채권(2021. 7. 9.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바, D은 달리 재산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2/11)을 피고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 3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각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D은 F과 피고 C으로부터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지급받았다(특별수익). 피고 C은 F과 함께 오랜 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형성하였고, 장애가 있는 장남 G을 돌보았으며, 2014년 F이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친 이후 혼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고 B는 F이나 피고 C의 부양 또는 병간호에 기여하였다(기여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F의 상속인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제1, 3 내지 8 부동산을, 피고 B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룬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F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한 피고들의 기여 정도와 내용,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F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219,168,796원(원고가 제출한 소송물가액산정내역서 참조)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현금 15,298,018원(= 14,191,209원 + 1,106,809원, 피고들이 제출한 2022. 3. 10.자 준비서면 57면 예금거래내역서 참조)이 있었다.

② F은 D에게 2007. 2. 5. 10,000,000원, 2007. 3. 13. 10,000,000원, 2007. 3. 14.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F은 2010. 10. 12. D에게 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의 계좌에서 2010. 11. 25. 42,000,000원이 대체 출금되었는바, 2010. 11. 25.은 D이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 관하여 2010.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점(피고들이 제출한 2022. 3. 10.자 준비서면 65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F이 D에게

8,000,000원을 지급한 2010. 10. 12.도 위 2010. 10. 7. 매매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에 비추어 보면, F은 D에게 위 I건물 J호의 매수자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D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은 D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특별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계산한 D의 법정상속분¹⁾은 57,175,784원[= 간주상속재산(= 부동산 합계 219,168,796원 + 현금 15,298,018원 + D의 특별수익 80,000,000원) × D의 법정상속분 2/11, 원 미만 버림]이고, 여기서 D의 특별수익 80,000,000원을 제외하면 D의 구체적 상속분은 -22,824,216원이다.

③ 피고 C과 F은 1965. 1. 10. 혼인신고를 한 후 F이 사망할 때까지 54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였고, F은 혼인기간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C과 F이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④ F은 2018. 1. 29.부터 2018. 2. 14.까지 K병원, 2018. 10. 11.부터 2018. 10. 19.까지 L병원, 2019. 10. 18.부터 2019. 10. 24.까지 M병원, 2019. 10. 25.부터 2019. 11. 2.까지 L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2.부터 2018. 10.까지 K병원, 2018. 10.부터 2019. 9.까지 L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F이나 피고 C은 위 기간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상속인들 중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는 F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와 그 배우자 N은 위와 같은 치료 과정에서 지출되는 병원비, 약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는 F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병간호를 주로 담당하였다.

⑤ F의 상속인 중 G, H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동의하였는데, D의 채권자들 때문에 G, H까지 자신이 갖는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F의 상속인들은 F의 재산 취득과 유지 및 부양에 특별히 기여한 피고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선 정 자 명 단

- 1. B
- 2. C
- 끝.

별지

목 록

1. 경남 합천군 O 대 159㎡ 중 80/159 지분
2. 경남 합천군 P 답 2387㎡
3. 경남 합천군 O
 [도로명주소] 경남 합천군 Q
 목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33㎡
 부속1 단독주택 26.4㎡, 부속2 부속사 16.5㎡
4. 경남 합천군 R 답 4837㎡
5. 경남 합천군 S 전 340㎡
6. 경남 합천군 T 답 3000㎡
7. 경남 합천군 U 대 187㎡
8. 경남 합천군 V 대 114㎡. 끝.

1)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합계 + 특별수익 합계 - 기여분 합계)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